

2009. 12. 18(금) 10:00

제163회 거창군의회(정례회)제3차본회의

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. 12. 07.
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. 12. 15(제7차 산업건설위원회)

라. 의안번호 : 제2009 - 60호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『지역 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』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(「공연법」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시·군·구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,
-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 검토, 관계기관 간 협조·조정 및 군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

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임

나. 주요내용

-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.(안 제6조의2 신설).
- 실무위원회는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 검토,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정리, 군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「공연법」에 따른 재해대처 계획 포함)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함.
-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됨.
-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고,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.
- 그 밖에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, 임기 등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게 정비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『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』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(실무위원회)에서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, 관계기관 간 협조 및 군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청하며 관련 실무위원만으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